

<고색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>

- 기 관 명 : 고색요양원
- 급여종류 : 시설급여(노인요양시설)
- 입소대상 :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인정 어르신
- 입소정원 : 26명

1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계약기간 :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한다.
- 2) 신원인수인(주보호자)의 권리 의무
어르신이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3) 계약의 해제
 -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때
 - ②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로 다른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- ③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4) 퇴소 : 다음의 경우 퇴소 및 이용 중단할 수 있다.
 - ①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
 - ② 이용료를 2회 이상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
 - ③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)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월 이용료 및 기타 자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
요양급여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74,850원	69,450원	64,040원
비급여	식재료비(3식)	8,400원(2,800원*3식)		
	간식비(1회)	800원		

2.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

- 1) 촉탁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
 - ①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한다.
 - ② 촉탁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2)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 - ① 주보호자(가족)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 - ②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반할 수 없을 경우,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- 3)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 - ① 외래병원(의원) 진료 시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한다.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
- ②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,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.

3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

- 입소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며 파손에 대하여 입소자 또는 주보호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.
- 입소자 생활 중 필요할 때에는 기관의 결정으로 치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.

4. 이용료 및 비용변경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